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 요령 개정 취지 및 신구조문

1. 개정 취지

방위사업청 관련규정 변경 및 원 조직개편 사항 반영, 주관기업 선정 평가 내실화, 방위사업청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함

* 관련근거: 방사청 훈령 제388호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 관련규정 변경 내용 반영

1) 배경 : 방위사업청 관련사업 규정 변경

무기체계 핵심부품 개발지원사업 규정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 무기체계 핵심부품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글로벌 방위 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 규정 통합

2) 적용규정 변경 사항 반영(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2,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별표 3, 별지 제2-1호, 별지 제3-7호

3)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변경(방사청 부품국산화 관리위원회 → 지원사업 통합관리위원회, 기품원 과제평가심의회→평가위원회) 사항 반영(제4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 2, 제24조, 제25조의 2)

4) 사업수행 기준 변경

① 사업계획 제출시기 및 구성변경(제9조)

② 주관기업 선정 후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기간 신설(제17조)

③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결과 등의 제출시기 및 기술료, 환수금, 이자 등의 처리 기준 변경(제25조, 제28조, 제30조, 별지 제3-7호)

나.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 2, 제23조, 제25조, 제25조의 2)

다. 주관기업 선정평가 내실화를 위한 절차 개선(제15조, 제16조)

1) 실제개발 능력이 부족함에도 발표 능력에 의한 주관기업 선정을 방지

하기 위한 평가순서 (서면·대면·현장 → 서면·현장·대면) 및 평가 생략
가능 대상(현장→서면) 조정

2) 현장평가 능력 배점 상향 조정(30%→40%, 서면평가 20%→10%)

3) 서면, 현장, 대면 평가 점수 70점 이상으로 명시

라. 기타 사항

1) 오기 수정, 인건비 중복계상 방지를 위한 관련 내용 추가 명시, 중소기업
채용 애로를 고려 신규채용인력 변경기한 연장(3개월→6개월) (별표 3)

2) 사업명 약어 추가(제1조)

3. 참 고 사 항

가. 관계원규 : 부품국산화업무규정

나. 의안 소관 부서 : 국산화사업실(055-751-5735)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목 차	개정안 목 차	비고
제1장~제2장 (생략) 제8조 (부품국산화 과제 평가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6조 (총사업비의 조성 등)	제1장~제2장 (현행과 동일) 제8조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6조 (사업비의 조성 등)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방기술품 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개발 지 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그 업무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국방기술품 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개발 지 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어 추가
제2조 (관련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국방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3.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 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4. 방위사업청 : 무기체계 핵심부 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무기체계 양산 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5. 기품원 : 부품국산화 업무규정	제2조 (관련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국방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3.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 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4.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육성 지 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방위사업관 리규정,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 품국산화 지침 5. 기품원 : 부품국산화 업무규정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4조 (업무분장) “무기체계 핵심부 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 여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 2. (생략) 3. 사업주관(국산화사업실)부서(장) 가. ~ 마. (생략) 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과제의 군사용 적합 판정, 국산화	제4조 (업무분장) “무기체계 핵심부 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 여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사업주관(사업관리)부서(장)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과제의 군사용 적합 판정 및 국산화	조직개편 사항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인증 및 국방규격(안) 검토 심의 사. ~ 카. (생략) 다. 부품국산화 과제 평가심의회 구성·운영 파. (생략) 4. 사업수행(지역센터) 담당부서(장) 가. ~ 라. (생략)	<u>화 인증 심의</u> 사. ~ 카. (현행과 동일) 다. <u>평가위원회</u> 구성·운영 파. (현행과 동일) 4. 사업수행(<u>개발관리</u>) 담당부서(장) 가. ~ 라.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제5조(주관기업 선정기준) 주관기업 선정기준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를 따른다.	제5조(주관기업 선정기준) 주관기업 선정기준은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의 선정기준</u>을 따른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6조(개발대상 부품) 개발대상 부품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4조를 따른다.	제6조(개발대상 부품) 개발대상 부품은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의 개발대상 기준</u>을 따른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7조(과제 선정기준) 과제 선정기준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5조를 따른다.	제7조(과제 선정기준) 과제 선정기준은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의 과제선정기준</u>을 따른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8조(부품국산화 과제 평가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사업주관부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계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부품국산화 과제 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회는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술진흥센터 실장 중에서, 위원은 다	제8조(<u>지원사업 평가위원회</u>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사업주관부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계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u>평가위원회</u>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u>평가위원회</u>는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u>평가위원회</u>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술진흥센터 실장 중에서, 위원은 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음 각 호의 자에서 기술진흥센터장이 지명하는 자로 선정한다. 1. 국산화개발관리 담당 및 해당 팀장 2. 본부 및 지역센터 전문가 3. 국방부, 방사청, 각군 및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④ 사업주관부서는 (추가) 기술료 징수, 관리 및 핵심부품사업 참여 기업 제재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 정한다. 1. ~ 2. (생략) 3.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4. ~ 5. (생략) (신설) ⑦ 평가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생략) ⑨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에서 기술진흥센터장이 지명하는 자로 선정한다. 1. <u>국산화개발관리 담당</u> 2. <u>원내 전문가</u> 3. 국방부, 방사청, 각군 및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④ 사업주관부서는 <u>핵심부품사업 참여 기업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관리, 기술료 징수·관리를 위하여</u>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동 운영규정</u>”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 정한다. 1. ~ 2. (생략) 3. 변호사, <u>변리사 또는</u> 공인회계사 4. ~ 5. (생략)) ⑦ <u>전문위원회는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u> ⑧ <u>평가위원회</u> 및 전문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현행과 동일) ⑩ 사업주관부서는 <u>평가위원회</u> 및 전문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개편 사항반영 원내전문가 범위확대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연간 사업계획 수립·보고) 사업주관부서는 연간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예산 담당부서(장)의 검토 후 매년 1월 말일까지 방사청(방산진흥국)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요, 추진방침 2. 개발대상 과제 및 일정별 추진계획 3. 예산집행 계획,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4. 부품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결과 5. 전년도 사업비 사용내역 및 정산결과	제9조(연간 사업계획 수립·보고) <u>사업주관부서는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예산 담당부서(장)의 검토 후</u> 방사청(방산진흥국)에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요, 추진방침 <u>2. 조사분석 및 과제 관리계획</u> <u>3. 참여기업 지원방안</u> <u>4. 예산집행 계획 및 주요추진 일정</u> (삭제) (삭제)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10조(지원사업의 과제 소요조사 등) ① 지원사업의 과제 소요조사 등은 방사청 “<u>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u>” 제12조를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매년 과제 소요조사를 위하여 조사분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u>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u>는 이 계획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조사분석결과를 종합하여 5년단위의 중장기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며, <u>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u>는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에 포함된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과제 제안 요청서[별지	제10조(지원사업의 과제 소요조사 등) ① 지원사업의 과제 소요조사 등은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의 <u>소요조사 절차</u>를 따른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매년 과제 소요조사를 위하여 조사분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u>사업수행부서</u>는 이 계획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조사분석결과를 종합하여 5년단위의 중장기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며, <u>사업수행부서</u>는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에 포함된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과제 제안 요청서[별지 1-1]를 작성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1-1]를 작성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부품의 적용장비와 국산화 필요성 2. 부품의 용도/기능, 규격, 요구 성능, 단가 등 3. 과제의 개발기간, 예상 개발비 4. 과제와 관련한 기술현황 및 개발·생산에 필요한 장비 등에 관한 정보 5. 내수 및 수출로 인한 예상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부품의 적용장비와 국산화 필요성 2. 부품의 용도/기능, 규격, 요구 성능, 단가 등 3. 과제의 개발기간, 예상 개발비 4. 과제와 관련한 기술현황 및 개발·생산에 필요한 장비 등에 관한 정보 5. 내수 및 수출로 인한 예상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제11조(지원사업 과제 발굴 및 검토) ① (생략) ② 과제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과제가 방사청 국산화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사업주관부서 또는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에서 국산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경우는 제외하며, 인센티브 액수는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0조의 소요조사, 과제제안 및 소요공문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사업의 과제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타당성 및 중복성을 검토한다. 1. 방사청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개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다.	제11조(지원사업 과제 발굴 및 검토) ① (현행과 동일) ② 과제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과제가 방사청 <u>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u> 심의결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사업주관부서 또는 <u>사업수행부서</u>에서 국산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경우는 제외하며, 인센티브 액수는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제10조의 소요조사, 과제제안 및 소요공문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사업의 과제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타당성 및 중복성을 검토한다. 1. 방사청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개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유사 과제 검색 결과와 1호의 결과를 종합하여 과제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3.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업체에 과제 제안 요청서 내용 적절성 검토와 기술지원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수행 예상 소요 비용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과제 제안 요청서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품질경영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과제로소에 대하여 과제추천여부, 추천대상과제의 추천순위 및 중소기업의 수행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과제제안자가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 결과를 제3항 1호의 종합결과와 함께 국산화관리위원회 심의를 상정한다. ⑥ ~ ⑦ (생략)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유사 과제 검색 결과와 1호의 결과를 종합하여 과제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3.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업체에 과제 제안 요청서 내용 적절성 검토와 기술지원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수행 예상 소요 비용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과제 제안 요청서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품질경영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과제로소에 대하여 과제추천여부, 추천대상과제의 추천순위 및 중소기업의 수행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사업주관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과제제안자가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를 제3항 1호의 종합결과와 함께 관리위원회 심의를 상정한다. ⑥ ~ ⑦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15조(과제수행계획서 서면평가) 사업주관부서는 제14조의 신청업체 자격여부 검토결과 적격업체에 대하여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과제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개발자금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별지 4-1]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대면	제15조(과제수행계획서 서면평가) 사업주관부서는 제14조의 신청업체 자격여부 검토결과 적격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과제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개발자금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별지 4-1]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평가내실화를 위한 순서

현행	개정안	비고
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 1.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 2. 평가위원 평점이 7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심의회에서 결정된 업체들을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 1.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 2. 평가위원 평점이 7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u>평가위원회</u>에서 결정된 업체들을 <u>현장평가</u>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u>3. 사업주관부서는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u>	조정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평가내실화 (현장평가 중시)
제16조(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① 사업주관부서는 대면평가 대상업체에 대하여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별지 4-2]에 따라 과제수행계획 및 개발자금의 적절성, 개발 및 제조능력 등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대면평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2. 평가는 과제수행계획서,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자금의 적정성과 연구용 기자재·시설 확보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	제16조(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③ 사업주관부서는 대면평가 대상업체에 대하여 <u>평가위원회</u>를 구성하여 [별지 4-2]에 따라 과제수행계획 및 개발자금의 적절성, 개발 및 제조능력 등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대면평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2. 평가는 과제수행계획서,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자금의 적정성과 연구용 기자재·시설 확보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도	평가내실화를 위한 평가순서 조정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로 검토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 (신설) ② 사업주관부서는 부품국산화개발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심의회에서 결정된 업체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평가대상 과제별로 지역센터 국산화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전문가 2~3인과 필요시 체계/부체계업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팀을 구성하며 평가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 사항가 시 세부내용은 [별지 4-3]에 따른다. - 개발 및 제조능력 - 유사품목 개발 및 양산 실적 - 과제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연구기자재, 시설 현황의 일치성과 상태 확인 - 기타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 2. 평가대상 과제별 현장평가팀장	로 검토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 <u>4. 대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u> ② 사업주관부서는 <u>현장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대면평가를 실시한다.</u> ① 사업주관부서는 평가대상 과제별로 국산화 개발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전문가 2~3인과 필요시 체계/부체계업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팀을 구성하며 평가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 사항가 시 세부내용은 [별지 4-3]에 따른다. - 개발 및 제조능력 - 유사품목 개발 및 양산 실적 - 과제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연구기자재, 시설 현황의 일치성과 상태 확인 - 기타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 2. 평가대상 과제별 현장평가팀장	평가내실화를 위해 70점이 상인 경우 적격처리 기준 추가 평가내실화를 위한 평가 순서 조정 평가내실화를 위한 평가 순서 조정

현행	개정안	비고
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평가팀은 평가대상 업체를 반드시 방문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공동개발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의 방문은 생략하고 주관기업 평가 시 참석토록 할 수 있다. 3. 현장평가는 대상업체의 개발능력[별지 4-3의 첨부 #1]과 과제수행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의 일치성 확인[별지 4-3의 첨부2]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4. 대상업체 개발능력의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 5. 과제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의 일치성 확인결과는 평가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평가팀장이 작성한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결과 및 우대배점으로 종합평점을 산정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방사청장(방산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text{종합평점} = (\text{대면평가 점수} \times 0.5 + \text{현장평가 점수} \times 0.3 + \text{서면평가 점수} \times 0.2) + \text{우대배점}$ ※ 현장평가를 생략한 경우 현장평가 점수는 만점으로 한다. ※ 종합평점 산정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	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평가팀은 평가대상 업체를 반드시 방문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공동개발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의 방문은 생략하고 주관기업 평가 시 참석토록 할 수 있다. 3. 현장평가는 대상업체의 개발능력[별지 4-3의 첨부 #1]과 과제수행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의 일치성 확인[별지 4-3의 첨부2]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4. 대상업체 개발능력의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효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산정한다. 5. 과제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의 일치성 확인결과는 평가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평가팀장이 작성한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결과 및 우대배점으로 종합평점을 산정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방사청장(방산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text{종합평점} = (\text{대면평가 점수} \times 0.5 + \text{현장평가 점수} \times 0.4 + \text{서면평가 점수} \times 0.1) + \text{우대배점}$ ※ <u>서면평가</u>를 생략한 경우 <u>서면평가</u> 점수는 만점으로 한다. ※ 종합평점 산정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	평가내실화를 위한 배점 조정 평가내실화를 위한 생략 대상 조정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우 현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현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⑤ 주관기업 선정 평가 시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운영 규정”에서 정한 가점기준표와 같이 우대 또는 감점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항목이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가점과 감점을 받은 항목만 인정하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 가장 큰 가점과 가장 큰 감점 점수를 합산한다. ⑥ (생략)	일 경우 현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현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⑤ 주관기업 선정 평가 시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u>에서 정한 가점기준표와 같이 우대 또는 감점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항목이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가점과 감점을 받은 항목만 인정하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 가장 큰 가점과 가장 큰 감점 점수를 합산한다. ⑥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17조(과제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①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주관기업 선정결과와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요구사항을 선정업체에 통보한다. ② 선정업체는 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완료 후 사업주관부서로 승인을 요청한다. ③ (생략)	제17조(과제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①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u> 따라 주관기업 선정결과와 과제수행계획서 보완 요구사항을 선정업체에 통보한다. ② 선정업체는 15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승인을 요청한다. ③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18조 (과제관리자 지정 및 관리번호 부여) ① 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과 개발지원사업(자금)협약이 완료되면 개발과제를 담당할 지역센터 기술팀에 통보하고 해당 기술팀장은 과제관리자를 지정하여 개발	제18조 (과제관리자 지정 및 관리번호 부여) ① <u>사업수행부서장은 주관기업과 협약이 완료되면 개발과제의 과제관리자를 지정하여</u> “부품 국산화 업무규정”에 따라 개발관리 업무에 착수토록 한다.	조직개편 사항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과제를 “부품국산화 업무규정”에 따라 개발관리업무에 착수토록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사업주관 부서는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사청 “무기 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주관기업의 장과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별지 2-1]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협약체결 후 결과를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에 통보한다.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는 통보 받은 협약서를 통해 “부품국산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산화 개발관리 업무에 착수한다. 다만, 개발협약은 통보 받은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로 대체하고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② (생략)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사업주관 부서는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따라 주관기업의 장과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별지 2-1]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협약 체결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 후 결과를 사업수행부서에 통보한다. 사업수행부서는 통보 받은 협약서를 통해 “부품국산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산화 개발관리 업무에 착수한다. 다만, 개발협약은 통보받은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로 대체하고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④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업은 다음의 사유로 협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약 변경 요청서[별지 제3-5]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신청한다. 1. 과제목표의 변경 2. 다년도 과제의 개발자금(지원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업은 다음의 사유로 협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약 변경 요청서[별지 제3-5]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신청한다. 1. 과제목표의 변경 2. 다년도 과제의 개발자금(지원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비) 규모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단, 개발지연으로 인한 개발기간 연장은 제22조의 2를 따른다) 4. 주관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또는 공동개발기업의 변경 5. 과제책임자의 변경 ② 사업주관부서는 협약변경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평가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주관부서는 승인여부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과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에 결과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생략)	비) 규모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단, 개발지연으로 인한 개발기간 연장은 제22조의 2를 따른다) 4. 주관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또는 공동개발기업의 변경 5. 과제책임자의 변경 ② 사업주관부서는 협약변경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주관부서는 승인여부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과 사업수행부서에 결과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협약의 해약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0조를 따른다. 주관기업은 협약의 해약이 필요할 경우 협약 해약 요청서[별지 제3-6]를 작성 사업주관부서로 신청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이를 평가심의회에 상정하여 해약 여부를 결정 후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승인을 요청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개발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 중복성이 제기될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에 상정하여 평가결과 중복성이 인정되면 방사청(방산진흥국)의 승인을 받아 해약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협약의 해약은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의 해약절차를 따른다. 주관기업은 협약의 해약이 필요할 경우 협약 해약 요청서[별지 제3-6]를 작성 사업주관부서로 신청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이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해약 여부를 결정 후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승인을 요청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개발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 중복성이 제기될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결과 중복성이 인정되면 방사청(방산진흥국)의 승인을 받아 해약할 수 있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생략)	③ (현행과 동일)	
제22조(개발 및 과제관리) ① 주관기업은 월간 업무실적서[별지 3-10]를 익월 5일까지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 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 는 분기단위로 주관기업을 방문하여 개발진도를 점검 후 그 결과[별지 3-11]를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발 및 과제관리) ① 주관기업은 월간 업무실적서[별지 3-10]를 익월 5일까지 <u>사업수행부서</u> 로 제출하여야 하며, <u>사업수행부서</u> 는 분기단위로 주관기업을 방문하여 개발진도를 점검 후 그 결과[별지 3-11]를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개편 사항반영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동일)	
⑤ 사업주관부서는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지원' 또는 '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 및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 한다. 단, 중단 등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심의회 를 개최하여 중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관부서는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지원' 또는 '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 및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 한다. 단, 중단 등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u>평가위원회</u> 를 개최하여 중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조직개편 사항반영
⑥ (생략)	⑥ (현행과 동일)	
⑦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 는 담당과제에 대한 개발관리 중 개발진행, 기업경영상태, 자금관리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해당 과제에 대하여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u>사업수행부서</u> 는 담당과제에 대한 개발관리 중 개발진행, 기업경영상태, 자금관리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해당 과제에 대하여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⑧ (생략)	⑧ (현행과 동일)	
⑨ 특별평가 결과 과제의 중단,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심의회 에 상정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 및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	⑨ 특별평가 결과 과제의 중단,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u>평가위원회</u> 에 상정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 및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	조직개편 사항반영
⑩ 주관기업은 개발계획, 참여인력, 개발자금 세부내역 등 과제수행계획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할	⑩ 주관기업은 개발계획, 참여인력, 개발자금 세부내역 등 과제수행계획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할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경우 과제수행계획서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9]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로 요청한다.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는 변경요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및 필요 시 보완 조치 후 신청서와 검토의견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추가하거나 증액할 경우에는 평가심의회에서 승인 한다. ⑪ (생략)	경우 과제수행계획서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제3-9]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부서로 요청한다. 사업수행부서는 변경요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및 필요 시 보완 조치 후 신청서와 검토의견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추가하거나 증액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승인 한다. ⑪ (현행과 동일)	조직개편 사항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22조의 2(개발기간 연장) ① 주관기업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에 사유로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개발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12]을 작성하여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로 신청한다. ②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개발기간 연장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검토의견과 함께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개발기간 연장신청 건의 지연사유, 연장 시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을 심의하며, 이 때 개발연장을 신청한 주관기업의 과제책임	제22조의 2(개발기간 연장) ① 주관기업은 방사청 “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개발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12]을 작성하여 사업수행부서로 신청한다. ② 사업수행부서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개발기간 연장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검토의견과 함께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한다. ③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개발기간 연장신청 건의 지연사유, 연장 시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을 심의하며, 이 때 개발연장을 신청한 주관기업의 과제책임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자를 참석시켜 개발지연에 대한 만회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 결과 개발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방사청(방산진흥국)에 개발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한다. ⑤ (생략) ⑥ 주관기업은 개발기간연장을 위한 개발협약이 체결되면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 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를 참석시켜 개발지연에 대한 만회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 개발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방사청(방산진흥국)에 개발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한다. ⑤ (현행과 동일) ⑥ 주관기업은 개발기간연장을 위한 개발협약이 체결되면 방사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의 채권확보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 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23조(최종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업은 시험평가가 완료되거나 협약기간이 종료하면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3-2]를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평가결과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 군사용 적합판정 요청서, 국산화 인증신청서, 국방규격(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담당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의 내용과 충실성을 검토 후 필요시 주관기업에 보완요구를 하며, 검토보완이 완료되면 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최종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업은 시험평가가 완료되거나 협약기간이 종료하면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3-2]를 사업수행부서의 개발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평가결과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 군사용 적합판정 요청서, 국산화 인증신청서, 국방규격(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부서는 담당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의 내용과 충실성을 검토 후 필요시 주관기업에 보완요구를 하며, 검토보완이 완료되면 사업수행부서의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개편 사항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제24조(최종평가) ① ~ ② (생략)	제24조(최종평가) ① ~ ②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개발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회계정산을 의뢰하여 부당 집행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며, 그 결과를 평가심의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심의회에서는 평가대상 과제별로 '성공', '실패' 여부를 판정한 후 '성공'과제는 '우수'여부를, '실패'과제는 '성실', '불성실' 여부를 심의한다. (이하 생략) ⑤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에 최종평가를 상정하여 '성공', '실패'여부와 과제정산내용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고 주관기업 및 체계업체, 부체계업체(해당 시)에 통보한다.<개정 2016. 5. 9.> ⑥ 평가심의회는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군사용적합 판정', '국산화 인증'을 함께 심의한다. ⑦ (생략)	③ 사업주관부서는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개발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회계정산을 의뢰하여 부당 집행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며,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 과제별로 '성공', '실패' 여부를 판정한 후 '성공'과제는 '우수'여부를, '실패'과제는 '성실', '불성실'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과 동일) ⑤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회에 최종평가를 상정하여 '성공', '실패'여부와 과제정산내용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고 주관기업 및 체계업체, 부체계업체(해당 시)에 통보한다.<개정 2016. 5. 9.> ⑥ 평가위원회는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군사용적합 판정', '국산화 인증'을 함께 심의한다. ⑦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25조 (후속조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는 “부품국산화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국방규격화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신청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신설)	제25조 (후속조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부서는 “부품국산화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국방규격화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신청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② 사업주관부서는 '불성실 실패' 과제의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지원금 환수', '제재'인 경우 관련 조치를 즉시 취한다.	조직개편 사항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u>③ 사업주관부서는 ‘성공’ 및 ‘성실 실패’ 과제의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 대해서는 즉시 환수 조치 한다.</u>	
제25조의 2 (재도전) ①최종평가 결과 ‘성실 실패’로 판정된 경우 주관기업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로 재도전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는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필요 시)을 방문하여 접수된 재도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⑤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는 재도전 계획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면 재도전 신청서와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의 검토의견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한다. ⑥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로부터 재도전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를 평가심의회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재도전 신청사항의 타당성 평가[별지 4-9]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	제25조의 2 (재도전) ①최종평가 결과 ‘성실 실패’로 판정된 경우 주관기업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u>사업수행부서</u>로 재도전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 <u>사업수행부서</u>는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필요 시)을 방문하여 접수된 재도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⑤ <u>사업수행부서</u>는 재도전 계획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면 재도전 신청서와 <u>사업수행부서</u>의 검토의견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한다. ⑥ 사업주관부서는 <u>사업수행부서</u>로부터 재도전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를 <u>평가위원회</u>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관부서는 <u>평가위원회</u>를 개최하여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재도전 신청사항의 타당성 평가[별지 4-9]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한다.	조직개편 사항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⑧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방산진흥국) 검토결과 재도전이 승인된 경우 그 결과를 주관기관, 관련 체계/부체계업체(해당시) 및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에 통보한다. ⑨ 사업주관부서는 재도전 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과 개발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수행부서(지역센터)에 개발관리를 지시한다. ⑩ (생략)	⑧ 사업주관부서는 방사청(방산진흥국) 검토결과 재도전이 승인된 경우 그 결과를 주관기관, 관련 체계/부체계업체(해당시) 및 <u>사업수행부서</u>에 통보한다. ⑨ 사업주관부서는 재도전 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과 개발협약을 체결하며, <u>사업수행부서</u>에 개발관리를 지시한다. ⑩ (현행과 동일)	조직개편 사항반영 조직개편 사항반영
제26조(총사업비의 조성 등) 총사업비의 조성 등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5조를 따른다.	제26조(사업비의 조성 등) 총사업비의 조성 등은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 에 따른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27조(사업비의 계상방법) 사업비의 계상방법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6조를 따른다.	제27조(사업비의 계상방법) 사업비의 계상방법은 방사청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 에 따른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28조(출연금의 집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는 방사청장이 정하는 국산화개발에 재투자하거나 방사청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8조(출연금의 집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는 <u>국고에 세입조치한다.</u> ③ ~ ⑤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30조(사업비의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사업주관부서는 매년 배정된 사업비 사용내역 및 정산 결과를 연간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방사청(방산진흥국)에 보고한다.	제30조(사업비의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① <u>사업주관부서는 매년 총사업비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제출하여야 한다.</u>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사업주관부서는 정부지원금의 정산금액,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과제 포기 또는 중단에 의한 반납·환수 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방사청(방산진흥국)에게 보고 및 국고에 세입조치 조치하여야 한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32조(채권 확보) 채권 확보에 대한 사항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0조를 따른다.	제32조(채권 확보) 채권 확보에 대한 사항은 방사청 “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 ”을 따른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33조(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 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는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6장을 따른다. ②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월 20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별지 제 3-3]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① 연구개발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는 방사청 “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 ”을 따른다. ②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월 20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별지 제 3-3]을 사업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34조(기술료 징수 및 활용) 기술료 징수 및 활용은 방사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장을 따른다.	제34조(기술료 징수 및 활용) 기술료 징수 및 활용은 방사청 “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 ”을 따른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제36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부품국산화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국방 전력발전업무훈령”과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및	제36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부품국산화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 ”, “국방 전력발전업무훈령”과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및 “부품국산화 업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부품국산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개발자금 산정 및 집행기준 1. 관련 근거 및 참고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운영규정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생략) 4.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개발 자금 산정 및 사용기준 가. 개발자금의 산정 기준 3) 간접비 산정 라)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①위탁~계상 ②위탁연구기관은~적용 ③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할 또는 국·공립~않음 (생략) 나. 개발자금의 관리 2)예금이자 가) 출연금의 ~ 사용할 수 있다. 나) 민간부담금의 예금이자 는 개발자금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 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한다.	[별표 3]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개발자금 산정 및 집행기준 1. 관련 근거 및 참고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u>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현행과 동일) 4.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개발 자금 산정 및 사용기준 가. 개발자금의 산정 기준 3) 간접비 산정 라)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①위탁~계상 ②위탁연구기관은~적용 ③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u>대학</u> 또는 국·공립~않음 (현행과 동일) 나. 개발자금의 관리 2)예금이자 가) 출연금의 ~ 사용할 수 있다. 나) 민간부담금의 예금이자 는 개발자금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u>사용 하여야</u> 한다. 다만, ~한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오기수정 오기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생략) 다. 개발자금의 사용 2) 사용기준 나) 비목별 사용기준 <직접비> ① 인건비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변경 시 변경시점 3개월 이내에 최초 협약예산 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 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현행과 동일) 다. 개발자금의 사용 2) 사용기준 나) 비목별 사용기준 <직접비> ① 인건비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변경 시 변경시점 6개월 이내에 최초 협약예산 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 후 사용할 수 있다. <u>㉮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다시 현금으로 계상하거나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다시 현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u>	중소기업 인력채용 애로를 고려 기간 현실화 중복계상 방지를 위한 강조
(이하생략) [별지 제2-1호]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제1조 (생략) 제2조 (국산화개발의 신의성실수행) 본 협약에 의한 국산화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해당시)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현행과 동일) [별지 제2-1호]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제1조 (현행과 동일) 제2조 (국산화개발의 신의성실수행) 본 협약에 의한 국산화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해당시)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방위사업청의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국산화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부품국산화 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 제6조 (생략) 제7조(협약의 해약 및 제재) (1)~(3)(생략) (4) 전문기관은 주관기업, 공동개발 기업에게 운영규정 제19조, 제21조 및 운용요령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중단, 불성실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 또는 정부출연 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 (생략)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1) 주관기업은 운영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화개발이 성공으로 평가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하면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생략) (3) 주관기업은 기술료를 조기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조기납부 시 운영규	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국산화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 제6조 (현행과 동일) 제7조(협약의 해약 및 제재) (1)~(3)(현행과 동일) (4) 전문기관은 주관기업, 공동개발 기업에게 운영규정 제16조, 제19조 및 운용요령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중단, 불성실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 또는 정부출연 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 (현행과 동일)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1) 주관기업은 운영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화개발이 성공으로 평가되고 최초 매출이 발생하면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현행과 동일) (3) 주관기업은 기술료를 조기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조기납부 시 운영규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정 제40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분할 납부시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다른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생략)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을 준수한다. (이하 생략)	정 제32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분할 납부시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다른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4) (현행과 동일)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을 준수한다.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별첨 11]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제9조 (관계법령의 준수) 위탁연구기관은 본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운용요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11]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제9조 (관계법령의 준수) 위탁연구기관은 본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u>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u> 및 운용요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별첨 12]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간의 연구개발 계약서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 (국산화개발 결과보고) 공동개발기업은 진도보고서를 20년 월 일 까지, 최종보고서는 국산화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	[별첨 12]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간의 연구개발 계약서 제1조 ~ 제3조 (현행과 동일) 제4조 (국산화개발 결과보고) 공동개발기업은 진도보고서를 20년 월 일 까지, 최종보고서는 국산화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	

현행	개정안	비고
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제10조 (생략)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공동개발기업은 본 국산화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운용요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또는 주관기업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제10조 (현행과 동일)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공동개발기업은 본 국산화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및 운용요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또는 주관기업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현행과 동일)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별지 제3-7호] <u>기술료 납부계획서</u> 작성요령 ⑦ 납부대상 기술료 : 정산결과 정부출연금 실사용금액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기술료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미만단위는 절사한다.)	[별지 제3-7호] <u>기술료 납부계획서</u> 작성요령 ⑦ 납부대상 기술료 : 정산결과 정부출연금 실사용금액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기술료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미만단위는 절사한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별지 제3-12호] <u>개발기간 연장 신청서</u>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3-12호] <u>개발기간 연장 신청서</u>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방사청 훈령 변경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비고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청자 : 주관기업명 대표이사 성명 (직인)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청자 : 주관기업명 대표이사 성명 (직인)	